
‘23년도 건설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

I 목 적

-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
 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^{*}를 자체적으로 심사·확인토록 하여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

*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 하려는 사업주는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·확인받는 제도

II 관련 규정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, 시행규칙 제42조제5항·제6항 및 제47조, 시행규칙 별표11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2호(2020. 1. 7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)
- 지정기준

-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^{*} 이하이며,
- 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(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,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)에 따라 직전 3년간(20년, 21년, 22년)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(1.90)을 적용함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(영 별표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 있고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이고
- 해당 연도 8월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('21. 8. 1.~'23. 7. 31.)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어야 함

III

지정 결과

(지정기간) '23. 8. 1. ~ '24. 7. 31.(1년)

(지정업체) (주)호반건설 등 29개 건설업체

시공순위	건설업체명(굵은 글씨: 2년 연속 선정 업체)
200위 이내 (29개사)	(주)호반건설, 대방건설(주), 동부건설(주), 한신공영(주), 삼성엔지니어링(주) , 우미건설(주) , (주)반도건설 , (주)부영주택 , 아이에스동서(주) , 효성중공업(주), (주)에이치제이중공업 , (주)금성백조주택 , 진흥기업(주), 에이스건설(주), (주)케이알산업 , 남광토건(주), (주)유승종합건설 , 경남기업(주) , (주)우미개발 , 계성건설(주), (주)우남건설 , 자이에스앤디(주), 동아건설산업(주) , (주)일군토건 , 위본건설(주), 이화공영(주), (주)까뮤이앤씨 , 일진건설산업(주), (주)중해건설

(혜택) 지정 건설업체가 향후 1년간('23.8.1.~'24.7.31.) 실착공하는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사·확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·확인은 면제

- (대상통보) 지정 건설업체 명단(29 개사)을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 공단 일선기관에 통보하고, 공단은 지정업체에 개별 통보

※ 행정처리 상 7.31 일 이전 결재를 시행하더라도 당해 연도 7.31 일까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지정업체에서 제외

- 사후관리

○ 지방관서

- 지정 건설업체 시공현장에서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정기감독 등 실시
- 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하다고 통보받은 현장에 대하여 지도·점검 실시

○ 안전보건공단

- 지정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사·확인 내용에 대한 선별 모니터링*을 실시하되,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한 현장은 해당 지방 노동관서에 즉시 통보
- *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, 위험공정 자체확인 등에 대한 지도·조언 또는 온라인 모니터링
- 지정 건설업체 현장에서 근로자 1 명 사망재해 발생 시 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에 따라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해 공단 확인 재개
- 동시에 2 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(시행규칙 별표 1 제3 호리목의 재해는 제외)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둘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